

2025년 개인정보보호 분야 기술개발 및 시제품 성능 평가·검증 자문 참여 기업 모집

「2025년 개인정보보호 기술개발 지원 사업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.

2025년 11월
(재)서울테크노파크 원장

1

사업개요

- 사업명** : 2025년 개인정보보호 분야 기술개발 및 시제품 성능평가·검증 자문
- 사업목적** : 디지털 전환 시대의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해 개인정보보호 기술의 개발·고도화를 지원
- 지원대상** : 개인정보보호 분야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추진하는 중소기업*
* 5. 중소기업 범위 참조(지역 제한 없음)
- 신청기간** : 선착순 모집, 예산소진 시 조기 종료
- 지원내용** : 기술개발 자문, 시제품 성능 평가·검증 자문

< 개인정보보호 분야 기술개발지원 자문 주요 내용 >

지원분야	프로그램명	지원내용	지원규모
개인정보 보호 기술 개발 지원	기술개발 자문	- 개인정보보호 기술 개발 과정에서 겪는 기술 애로 해결을 통한 원천기술의 실용화 지원	30개사 내외
	시제품 성능 평가·검증 자문	- 개인정보 보호책임자, 보안전문가, 법률전문가 등 자문단의 성능 평가 및 개선 의견 제시	10개사 내외



2

개인정보보호 기술개발 자문

지원분야

① 개인정보보호 기술개발 자문

- 세부사업명** : 개인정보보호 기술개발 자문
- 신청기간** : 공고일 ~ 선착순 모집(예산소진 시 조기 종료)
- 지원대상** : 개인정보보호 분야 기술개발 애로해결이 필요한 전국 중소기업
- 지원규모** : 30개사 내외([기업별 최대 10회 자문 지원, 기업부담금 없음](#))
- 지원내용** : 기술이전, 공동R&D연계, 기술경영 등 자문 지원

< 기술개발 자문 주요 내용 >

분야	주요 내용
기술이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개발된 원천기술의 기술이전 가능성 검토 및 대상 탐색 - 기술이전 계약·절차에 대한 기초 자문 및 전략 수립자문 - 수요기관(공공/민관)과의 매칭 기반 이전 연계
공동R&D연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유관 기관, 연구소, 수요기관이 공동 R&D 연계 가능성 검토 - 기술 상용화를 위한 컨소시엄 또는 과제 참여 방안 제안
기술경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기술로드맵 점검, R&D 투자계획, 인력 운영 전략 등 경영자문 - TRL 수준 향상을 위한 개발 방향 및 단계별 실행 전략 자문
기술자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기업 보유 기술의 기술성, 확장성, 보호수준 등 진단 - 지식재산권(특허, 실용신안 등) 확보 전략 자문
기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기술개발 중 겪는 문제에 대한 원인 진단 및 대안 도출 - 외부 전문기관(법률, 회계 등) 연계 필요시 가이드 제공

 진행절차 및 일정

*일정은 기관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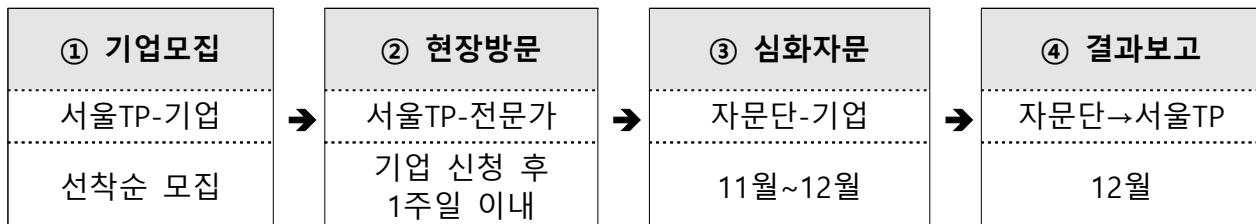
- **현장방문** : 신청기업의 사업분야에 적합한 전문가를 매칭하여 기업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, 현장결과를 기반으로 심화자문 필요 여부 판단
- **심화자문** : 자문단은 서울TP 보유 전문가 또는 신청기업이 추천한 전문가를 활용하여 자문단 구성 가능

지원분야
② 개인정보보호 시제품 성능평가·검증 자문

- 세부사업명** : 개인정보보호 시제품 성능평가·검증 자문
- 신청기간** : 공고일 ~ 선착순 모집(예산소진 시 조기 종료)
- 지원대상** : 개인정보보호 분야 시제품 성능평가·성능검증 과정에서 애로해결이 필요한 전국 중소기업
- 지원규모** : 10개사 내외([기업별 최대 10회](#) 자문 지원, 기업부담금 없음)
- 지원내용** : 시제품 성능평가, 성능검증 등 자문 지원

< 시제품 성능평가·성능검증 자문 주요 내용 >

분야	주요 내용
시제품 성능평가·성능검증 자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개인정보 보호책임자, 정보보안 전문가, 개인정보 보호법 전문가 등 전문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최대 3인 자문단 구성 - 기술·시제품의 사업화를 위하여 자문단의 성능 평가 수행 및 개선 방향 의견 제시

□ 진행절차 및 일정


*일정은 기관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- **현장방문** : 신청기업의 사업분야에 적합한 전문가를 매칭하여 기업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, 현장결과를 기반으로 심화자문 필요 여부 판단
- **심화자문** : 자문단은 서울TP 보유 전문가 또는 신청기업이 추천한 전문가를 활용하여 **최대 3인** 자문단 구성 가능

□ 제출서류

구분	제출서류	비고
1	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	필수
2	개인(기업)정보 제공 및 신용조회 동의서	필수
3	수혜기업 성실 참여 및 자료제공 협약서	필수
4	신청자격 자가진단표	필수
5	사업자등록증	필수
6	회사소개 및 제품 안내자료 (자율양식)	선택

※ 필요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,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
□ 문의처

사업명	이메일	연락처
개인정보 보호 기술개발 지원 (①~②)	biz@seoultp.or.kr	02-944-6035, 6023

※ 문의가 많아 전화 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메일을 통해 문의사항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3

유의사항

□ 지원 제외 대상

- 신청일 현재, 정부 또는 기타 기관으로부터 동일·유사과제로 지원받고 있는 기업
 - * 이미 선정된 기업이라도 중복지원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본 사업 참여 제외
- 접수기간 내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를 미제출하거나,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
- 접수기간 및 사업기간 내 휴·폐업 상태인 기업
- 신청서 및 제출서류의 허위 기재가 확인된 경우
- 신청기업 및 대표자가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자로 등재된 경우
- 신청기업(수혜기업)·대표자 또는 공급기업·대표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수행 정부 사업 과제의 의무사항(보고서 제출, 기술료 납부 등)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
- 신청기업(수혜기업)·대표자 또는 공급기업·대표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 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
- 기타 동 사업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
- 수혜기업 및 공급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이 서로 간에 접수 마감일 현재 아래 '특수관계인'에 해당하는 경우(「법인세법」 시행령 제87조 등 관련 규정에 따른 특수관계인 범위 적용)

< 특수관계인의 범위 >

구분	범위
친족	배우자(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)
	본인의 6촌 이내의 혈족
	본인의 4촌 이내의 인척
	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·직계비속
사용인	사용인, 기타 고용관계자
	본인 또는 친족의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 또는 법인의 사용인, 기타 고용관계자
생계의존	금전 등 기타 재산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자
	본인과 생계를 함께하는 자

□ 과제의 중단 및 제재

- 진도점검 결과에 따라 사업이 중도에 중단될 수 있음
 - * 불성실 수행으로 인한 중단 시, 참여제한 등 제재 조치 부과
- 사업 진행 중 신청서 및 제출서류의 허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업 취소 조치

□ 기타사항

- 필요 시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,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- 과제 진행기간 중 또는 종료 후 주관기관이 사업성과 활용을 위해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함

4

(별첨) 중소기업 범위(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)

□ 「중소기업기본법」상의 중소기업

○ 규모 기준

- 업종별 평균 매출액 기준 :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의 3년 평균 매출액이 해당 업종의 기준 이하(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」 별표 1 기준)
[*세부 중소기업범위기준은 해당링크 클릭하여 평균매출액 확인 必](#)
- 자산총액 상한 기준 : 업종에 관계없이 자산총액이 5,000억 원 미만

○ 독립성 기준 (아래 조건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할 것)

-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
- 자산총액 5,000억 원 이상인 법인이 해당 기업의 주식 30%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 소유하고, 그 법인이 최다출자자인 경우
- 관계기업의 평균매출액 등(출자비율 포함)이 업종별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

○ 적용 대상

- 영리기업뿐 아니라 비영리 사회적기업, 협동조합 등도 본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중소기업으로 인정

□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시행령 제4조(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)를 영위하지 않는 중소기업

1. 일반유통주점업(56211)
2. 무도유통주점업(56212)
3.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(91249)
4. 그 밖에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*()의 업종 분류 코드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.